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4. 13 선고 2020가단13491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연

피고B

변론 종결2021. 3. 23.

판결 선고2021. 4. 13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/15 지분에 관하여 2018. 8. 17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8,754,35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8,754,357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판사이재회

별지